

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
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논산시의회 의장 



2022년 1월 13일

논산시의회규칙 제7호

## 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 
개정한다.

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)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 
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 
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 위원회  
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  
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 
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9조의3(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)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 
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의장은  
위원이 질병, 장기여행, 중도 사퇴, 품위손상,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

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③ 위원이 꺾워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9조의4(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)**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□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9조의2(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) ①</u> <u>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<u>②</u> <u>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9조의3(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) ①</u> <u>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p><u>②</u>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의장은 위원이 질병, 장기여행, 중도 사퇴, 품위손상, 그 밖</u></p>

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입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③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입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<신 설>

제9조의4(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)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